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서비스 기간은 대상자와의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로 한다.

(계약 방법) 계약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계약을 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 할 경우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②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1일 8시간 이상) 월 120%한도액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단, 2023년 이후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제외된다.

2. 본인부담금

①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 [별표1]과 같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법정 대리인)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④ 계약 당사자에게 재가급여제공서비스에 따른 비용 청구

2. 이용자의 의무

- ① 월비용 납부 의무
-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요양보호사에 규정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 ⑤ 기타 장기요양에 관한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③ 수급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⑦ 수급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⑧ 수급자는 급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1.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3. 이용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 4.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5.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6.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별표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3.1.1.기준)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2. 방문요양 이용시간당 금액

방문당 시간	수가(원)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3. 방문목욕

구분	수가(원)
차량이용(차량 내) 60분	82,160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차량 미 이용	46,250

4.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장기요양 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등급	35,480	47,570	59,160	65,180	69,890
2등급	32,850	44,060	54,810	60,380	64,750
3등급	30,330	40,670	50,600	55,780	59,810
4등급	28,940	39,290	49,220	54,370,	58,430
5등급	27,560	37,890	47,820	52,990	57,040
인지지원등급	27,560	37,890	47,820	47,820	47,820

5.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6.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7.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2) 주야간보호의 세부기준
 -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	1식당 4,000원